

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부 제출) 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청년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(안 제16조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김 성 완)